

등록번호	여성가족과-26521
등록일자	2015.7.30.
결재일자	2015.7.30.
공개구분	부분공개

★주무관	보육지원팀장	여성가족과장	복지환경국장	부구청장	
최수희	문성수	유정택	유용렬	전결 07/30 황치영	
협 조					

- 국공립 다산어린이집 외 2개소 -

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계획



복지환경국
여성가족과

요 약 지

대상시설 : 3개소 [신규위탁 1, 재위탁 2]

시설명	원장	위탁구분	위탁기간	현 위탁체	비고 (최초위탁일)
다 산	이승화 (38세)	신규	5년 (2016.1.1~2020.12.31.)	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 (유경춘) [2013.1.1.~2015.12.31.]	1995.3.1.
총 무	김미숙 (42세)	재위탁	3년 (2016.1.1~2018.12.31.)	신일교회 (배요한) [2013.1.1.~2015.12.31.]	2007.1.1.
신당동	이화영 (43세)	재위탁	3년 (2016.1.1~2018.12.31.)	(재)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(문정민) [2013.1.1.~2015.12.31.]	2013.1.1.

위탁기간 : 신규위탁 5년, 재위탁 3년

※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」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함.
단, 재위탁은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개정(2013.11.27.)에 따라 종전 위탁기간이 3년인
경우는 재위탁 3년 유지 [위탁기간 경과조치]

선정방법

- 신규위탁 : 공개모집(모집공고) → 접수 →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
- 재 위 탁 : 공개모집 절차 없이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심의

모집공고 : 2015. 8. 12.(수) ~ 2015. 9. 1.(화) (예정)

접수기간 : 2015. 8. 24.(월) ~ 2015. 9. 1.(화)

보육정책위원회 개최 : 2015. 10월초

- 국공립 다산어린이집 외 2개소 -

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계획

2015. 12. 31일자로 재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다산어린이집과 신규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충무, 신당동어린이집에 대하여 『영유아보육법』 및 『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』 규정에 따라 위탁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관련 근거

-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, 제24조의2
-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~제16조
- 2015년 보육사업 안내지침 「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」
- 「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」 준용 (서울시 보육담당관, 2015.4.10.)

II 위탁 개요

- 위탁대상 : 3개소 [신규위탁 1, 재위탁 2]

시설명	위탁구분	위탁기간	현 위탁체	비고 (최초위탁일)
다 산	신 규	5년 (2016.1.1.~2020.12.31.)	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 (유경춘) [2013.1.1.~2015.12.31.]	1995.3.1.
충 무	재위탁	3년 (2016.1.1.~2018.12.31.)	신일교회 (배요한) [2013.1.1.~2015.12.31.]	2007.1.1.
신당동	재위탁	3년 (2016.1.1.~2018.12.31.)	(재)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(문정민) [2013.1.1.~2015.12.31.]	2013.1.1.

- 위탁기간 : 신규위탁 5년, 재위탁 3년

※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」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함.
단, 재위탁은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개정(2013.11.27.)에 따라 이전 종전 위탁기간이 3년인 경우는 재위탁 3년유지 [위탁기간 경과조치]

III 모집 및 선정방법

선정방법

- 신규위탁 : 공개모집(모집공고) → 접수 →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
- 재 위 탁 : 공개모집 절차 없이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심의

모집공고 : 2015. 8. 12.(수) ~ 2015. 9. 1.(화)

접수기간 : 2015. 8. 24.(월) ~ 2015. 9. 1.(화)

접수방법 : 방문접수(중구청 여성가족과)

보육정책위원회 개최 : 2015. 10월초(보육정책위원과 일정 협의 후 확정)

※ 공개모집 신청 접수한 위탁체 수가 단수일 경우,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예정

IV 어린이집 시설현황

신규위탁

어린이집명	원장	소재지	규모(㎡)		아동현황		교직원	비고
			대지	연면적	정원	현원		
다 산	이승화 (38세)	동호로15길 50 (다산동)	1,124	1,747 (지하2~지상3)	195	167	29	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방과 후

재위탁

어린이집명	원장	소재지	규모(㎡)		아동현황		교직원	비고	
			대지	연면적	정원	현원			
총 무	김미숙 (42세)	동호로27길 21 (목정동)	237.6	340.63 (지하1~지상2)	67	57	11	시간연장형	
신당동	이화영 (43세)	청구동8길 41 (신당동)	본관	432	대체 신축 중 576 (지하1~지상3)	115	102	23	다문화통합 시간연장형 24시간
			별관	267					

※ 신당동 어린이집 본관 대체 신축 추진(현재 별관 리모델링 사용 중)

- 공사기간 : 2015. 3. ~ 2016. 4.
- 시설규모 : 연면적 933.78㎡ (지하1층~지상4층)
- 정원(예정) : 124명

V

세부추진계획

1. 공개모집(신규위탁)

□ 위탁운영체 신청자격 및 모집

- 모집공고문 게시 및 홍보 : 2015. 8. 12(수) ~ 2015. 9. 1(화)
-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(안) : 【붙임1】
- 신청서 접수 : 2015. 8. 24(월) ~ 2015. 9. 1(화) 18:00까지
※ 토 . 공휴일 제외, 우편접수 불가
- 어린이집별 신청 접수한 위탁체수가 단수일 경우, 1회에 한하여 재공고
단, 1회 재공고 후에도 동일하면 심의 진행
- 복수 신청 접수 후 심의일 전에 위탁체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될 경우 심의 진행
- 신청자격
 - 법인 또는 단체 :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 - 개 인 :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(※ 단, 공고일 현재 민간 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)
- 신청제외 대상(결격사유)
 - 『영유아보육법』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 -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(자)
 -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(시정명령 제외)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
 - 운영주체의 지도·감독시 공신력·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
 -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 또는 실체가 없는(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) 법인 및 단체

○ 위탁조건

-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.

-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(영아·장애아·시간연장·다문화통합)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특히 각 시설별 보육유형에 의한 취약보육은 반드시 실시.

※ 시간연장 보육은 필수사항이며, 구에서 권장하는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

-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

-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,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, 중구 영유아보육조례, 위·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(위탁의 취소 및 해지)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

-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『어린이집 사무 위·수탁 계약서』로 위탁 계약 체결

※ 어린이집 사무 위·수탁 계약서에 전입금에 대한 '보증보험 가입' 조건 명시

○ 구비서류

- 신규위탁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관련 제출 서류 : **【붙임2】**

- 제출서류 : 18부 (원본 1부, 사본 17부)

※ 쪽수 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(부동산 등기부등본)는 원본에만 첨부

○ 홍보 및 모집방법

- 구보 게재

- 중구청 및 서울특별시 육아정보센터 홈페이지 게재

- 관내 어린이집(구립, 민간 등)에 홍보 공문 발송

- 서울특별시, 각 구청 공문발송 등 홍보 요청

2. 재위탁 심사 신청

재위탁 심사 신청

- 신청기한 : 2015. 9. 4.(금) 18:00까지
 - 제출서류
 - 재위탁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관련 제출 서류 : **【붙임2】**
 - 제출부수 : 18부 (원본 1부, 사본 17부)
- ※ 쪽 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(부동산 등기부등본)는 원본에만 첨부

3. 위탁심사(신규·재위탁)

위탁체 심사

- 위탁체 심사 : 중구보육정책위원회
 - 심사일시 : 2015. 10월초 (심의위원들과 일정 협의 후 확정)
 - 심사방법
 - ▶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심사기준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신청 위탁체별로 점수를 부여 (※필요시 현지조사 실시)
 - ▶ 신청 위탁체에게 위탁취지 및 운영계획 설명기회 부여 [프리젠테이션 5~10분]
- 위탁체 선정평가 심사기준
 -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(신규·재)위탁체 심사 기준표 **【붙임3】**
 - 평가표는 「2015년 보육사업안내(보건복지부)」의 선정관리 기준 및 「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」 준용 (서울시 보육담당관, 2015.4.10.)
 - 심사항목 5개, 세부항목 16개
 - ▶ (신규) 어린이집 운영계획,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,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, 공신력, 재정능력
 - ▶ (재위탁)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,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, 어린이집 운영계획, 공신력, 재정능력

신 규 위 탁			재 위 탁		
심 사 항 목	배점	항목	심 사 항 목	배점	항목
1. 어린이집 운영 계획	40	8	1.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	30	4
2.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	35	4	2.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	20	3
3.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	10	1	3. 어린이집 운영계획	35	7
4. 운영체의 공신력	10	2	4. 운영체의 공신력	10	1
5. 운영체의 재정 능력	5	1	5. 운영체의 재정 능력	5	1
합 계	100	16	합 계	100	16

□ 위탁체 선정방법

① 신규위탁

- 선정방법 : 위원별 배점 결과,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선정,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함.
(※ 최고·최저점수가 2개이상일 경우 1개씩만 제외)
- 점수가 동점일 경우 : 어린이집 운영계획,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,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고득점자 순 결정
- 선정된 위탁체가 결격사유 발생시 : 차점자로 선정(단, 평균 70점 이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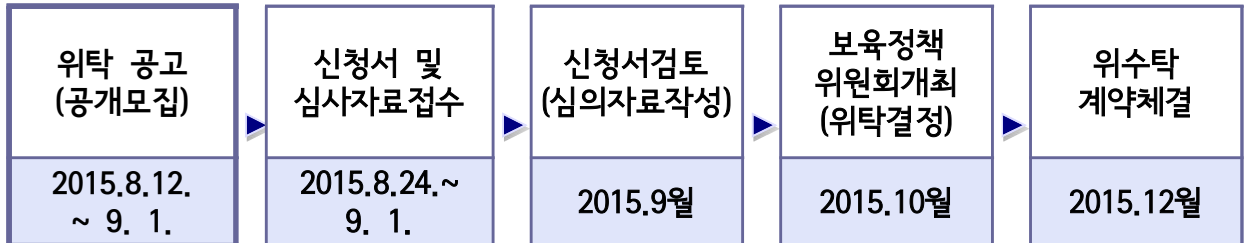
② 재 위 탁

- 선정방법 : 위원별 배점 결과,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
 -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결정
 -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재위탁 부적격 처리
 (※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, 최고·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씩만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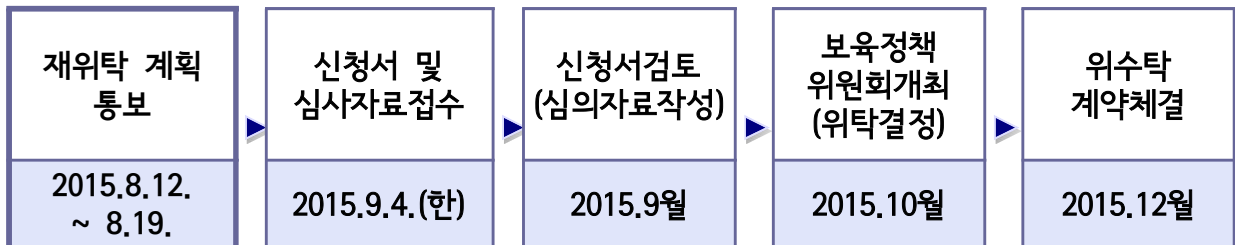
☞ 심사결과 운영체의 재위탁 부적격 처리시 변경위탁(공개경쟁) 절차에 따라 모집 공고 후 위탁체 선정

VI 추진 일정

□ 신규위탁 : 다산어린이집



□ 재위탁 : 총무, 신당동어린이집



VII 소요 예산

□ 총 예산 : 2,100천원(금이백일만원)

□ 소요내역

○ 위원회 참석수당

- 산출내역 : 150,000원 × 13명 = 1,950,000원

- 예산과목 :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, 보육서비스 수준제고, 어린이집
특수사업지원, 일반운영비

※ 심사일정을 감안하여 2시간 이상시 15만원 지급

○ 위원회 준비비용

- 산출내역 : 10,000원 × 15명 = 150,000원

- 예산과목 :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, 보육서비스 수준제고, 어린이집
특수사업지원, 업무추진비

- 붙임 : 1.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(안) 1부.
2. 어린이집 (신규재) 위탁신청서 및 제출 서류 1부.
3.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(신규·재위탁) 심사 기준표 각 1부. 끝.